

대회기간 경기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규칙

2014. 12. 16. 제정

2017. 12. 29. 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근거 및 목적) 이 규칙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상벌위원회 규정 제 18조 3항에 의거 제정하며, 대회기간 중 경기장 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스페셜올림픽 풍토를 조성하여 선진 질서를 조기에 정착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칙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및 시·도지부, 경기위원회와 그 단체의 산하 모든 조직(이하“해당 단체”라 한다)에서 주관하는 대회기간 중 발생하는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 (징계대상) 징계 대상은 각 호와 같다.

1. 단체 임직원 (심판 포함)
2. 산하 단체 임직원 (심판 포함)
3. 팀의 임원
4. 선수 및 지도자 (코치, 감독)

제4조 (징계절차)

- 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자는 사건발생 직후부터 상벌위원회의 징계 확정까지 해당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.
- ② 해당단체, 팀, 선수 및 지도자는 사건 발생 후 즉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 한후, 5일 이내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정한다.
- ③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 및 관련해당자에게 진술 할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으며 해당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

- ④ 상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징계가 확정되면 본인 및 소속 단체에 징계 내용을 직접 통보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통고한다.
- ⑤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 해당 단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.
- ⑥ 재심 청구에 의한 의결은 해당 단체 이사회에서 하며 7일 이내에 심의 결정한다.

제5조 (징계해제 및 경감)

-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정의정이 뚜렷하고 스포셜올림픽 발전에 기여할 자세가 인정 될 경우에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조치 할 수 있다.
- ② 자격 정지의 경우에는 징계기간의 1/2이상이 경과 되어야 하며 무리한 자격 정지의 경우는 징계 후 3년 이상이 경과 되어야 해제 또는 경감 조치 할 수 있다.

제6조 (제재 조치) 해당단체가 징계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포셜 올림픽코리아가 해당 단체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7조 (유형별 징계기준) 유형별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 (2014.4.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7.12.2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
[별첨]

유형별 징계기준

1. 심판 및 임원

- 가. 심판 배정 상 불공정 행위: 자격정지 1년 이상
- 나.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: 자격정지 1년 이하
- 다. 불공정한 심판행위: 무기한 자격정지(고의적 부정행위)
 - 파견 심판의 경우 해당 경기단체에 통보

2. 선수 및 보호자

- 가. 심판 판정 불복 폭언: 출전정지 6개월 이상
- 나. 심판에 대한 폭행: 출전정지 2년 이상
- 다. 부정 출전 선수: 출전정지 1년 이상<개정 2017.12.29.>
- 라. 선수 및 보호자 상호간 폭행
 - 주동자: 출전정지 1년 이상
 - 가담자: 출전정지 6개월 이하

3. 지도자

- 가. 심판 판정 불복(경기지연)폭언: 자격정지 1년 이상
- 나.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: 자격정지 5년 이상
- 다.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: 자격정지 1년 이상
- 라.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(교사): 자격정지 1년 이상
- 마.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: 자격정지 6개월 이하
- 바.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
 - 주동자: 무기한 자격정지
 - 가담자: 자격정지 2년 이상
- 사. 중징계 대상자의 경우 상급 소속기관에 통보



4. 기타 임원

- 가. 심판 판정 불복(경기지연)폭언: 자격정지 1년 이상
- 나.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: 자격정지 5년 이상
- 다.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: 자격정지 6개월 이하
- 라.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
 - 주동자: 무기한 자격정지
 - 가담자: 자격정지 5년 이상

5. 단체(팀)

- 가. 심판불복 경기방해: 출전정지 6개월 이하
- 나. 경기장 폭행 난동: 출전정지 3년 이상
 - 상급 소속기관에 통보
- 다. 부정선수 참가 :
 - 해당 대회 몰수 패
 - 해당 대회 1년 이상 출전 금지